

### 제 3 장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

#### 제 10 조 (계약기간)

- (1)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.
- (2) 장기요양 인정 갱신 및 등급변경 등으로 인정서 유효기간이 변경되거나 수가 변경 등으로 급여비용 변경되었을 경우 재계약함(계약변경)을 원칙으로 한다.
- (3) 수급자의 상황에 따라 시간(1시간이상)이나 일정, 횟수가 일시적 또는 지속적으로 변경될시 변경대장에 사유를 기재한다.

#### 제 11 조 (계약목적)

고령이나 노인성질환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방문요양급여, 방문목욕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위생적인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.

- (1) 계약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한다.
- (2) 장기요양기관은 계약체결 전 수급자가 이용하고 있는 재가급여종류(방문요양, 방문목욕)와 금액을 확인하고,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.
- (3) 월 한도액 초과분은 보험이 적용되지 않고, 본인이 전액 부담하여야 하므로, 장기요양기관은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재가급여를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, 본인의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함.

#### 제 12 조 (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)

장기요양보험으로부터의 급부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는 원칙으로서 일반 대상자는 기본요금(요금표)의 15%, 의료수급자 및 경감대상자 6%(본인일부부담금100분의 60감경하는 자), 9%(본인일부부담금100분의 40감경하는 자), 기초수급자는 면제임. 다만, 장기요양보험의 급부의 범위를 넘은 서비스(한도초과) 이용은 전액 자기 부담이 된다. 그밖에 비용부담에 대해서는 심야(오후 10시에~오전 6시)에 급여를 이용한 경우 경우 30%, 일요일에 급여를 이용한 경우 30%, 공휴일 급여를 이용한 경우 50% 가산 되어 청구된다.(세부적인 내용은 제 4장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참고)

#### 제 13 조 (신원 인수인의 권리·의무)

1. 신원인수인(보호자) 권리는 다음과 같다.

1)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

2)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대상자의 계약해지와 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

3) 대상자의 생활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

4) 대상자의 건강, 식사, 생활상담, 조언 및 생활편익 및 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

5) 서비스 제공시 건의사항, 불편사항, 개선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

6) 대상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원인수인의 알 권리

**2. 신원인수인(보호자)과 기관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.(갑-대상자, 을-기관, 병-보호자)**

1) ‘갑’은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.

- ① 월 이용료 납부
- ② 방문요양, 방문목욕급여 범위내 급여이용
- ③ 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
- ④ 기타 ‘을’과 협의한 규칙 이행

2) ‘을’은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.

- ① 방문요양, 방문목욕급여 제공 계약내용 준수
- ② 급여제공 중 ‘갑’에게 신병 이상이 생기는 경우 즉시 ‘병’에게 통보
- ③ 급여제공시간에 ‘갑’의 주변 및 집기류의 청결 및 유지관리
- ④ 급여제공 중 알게 된 ‘갑’의 신상 및 질환 등 에 관한 비밀유지  
(단, 치료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는 예외)
- ⑤ 이용상담, 지역사회 다른 서비스 이용 정보제공
- ⑥ ‘갑’이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급여제공
- ⑦ 이용상담, 지역사회 다른 서비스 이용 정보제공
- ⑧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 보호 준수
- ⑨ 기타 ‘갑’(또는 ‘병’)의 요청에 협조

3) ‘병’은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.

- ① ‘갑’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
- ② ‘갑’의 월 이용료 등 비용 부담
- ③ 인적 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‘을’에게 통보
- ④ ‘갑’에 대한 의무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‘을’에게 통보
- ⑤ 기타 ‘을’의 협조요청 이행

**3. 이 외에 다음에 내용을 숙지하고, 대상자 또는 가족이 책임이행에 동의하여야 한다.**

- ① 기관과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실시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.
- ② 이용의뢰서 또는 신청서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 시에는 반드시 기관에 통보한다.
- ③ 서비스 제공시 발생할 수 있는 비고의적인 사고나 부상에 대해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.
- ④ 분실, 파손,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며, 사고 발생 시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.

**제 14 조 ( 계약의 해지)**

**1. ‘갑’(또는 ‘병’)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‘을’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**

- 1) 급여계약서의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
- 2) 급여계약서의 제3조의 방문요양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
- 3) 급여계약서의 제4조제2항의 방문요양급여 제공시간을 ‘갑’(또는 ‘병’)의 동의 없이 ‘을’이 임의로 변경하거나 배치된 장기요양요원을 임의로 변경 했을 경우
- 4) 기타 ‘갑’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

**2. ‘을’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‘갑’(또는 ‘을’)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**

- 1) 급여계약서의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
- 2) 급여계약서의 ‘갑’이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
- 3) 급여계약서의 ‘갑’의 건강진단 결과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」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
- 4) ‘갑’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
- 5)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‘갑’이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
- 6) ‘갑’이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방문요양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

**3. 이 계약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약할 수 있다.**

- 1) “갑”이 계약 해지를 통지한 때. 다만, 해약의 통지는 7일 전에 하여야 한다.

- 2) “을”이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을 지속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행하여 이를 “갑”에게 통지한 때. 다만, 해약의 통지는 14일 전에 하여야 한다.
- 3) ‘을’은 제6조제2항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를 별지 제 2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종결안내서 및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‘갑’과 ‘병’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.

## 제 4 장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

### 제 15 조 ( 서비스 이용료 )

<요양보호사 방문요양, 방문목욕 서비스 이용의 경우 2026.01.01 기준>

(단위 : 원/회당)

#### ○ 방문요양의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

| 분류    | 금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분류   | 금액     | 분류   | 금액      |
|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|--------|------|---------|
| 30분   | 2,618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20분 | 6,515원 | 210분 | 9,530원  |
| 60분   | 3,798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50분 | 7,596원 | 240분 | 10,512원 |
| 90분   | 5,118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80분 | 8,553원 |      |         |
| 야간가산  | 22시 이후 06시 이전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는 30% 가산 |      |        |      |         |
| 일요일가산 | 일요일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는 30% 가산           |      |        |      |         |
| 휴일가산  | “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”에 의한 공휴일 50% 가산   |      |        |      |         |

#### ○ 방문목욕의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

| 분류                      | 금액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|
|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(차량내 목욕) | 88,990원 |
|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(가정내 목욕) | 80,230원 |
|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   | 50,100원 |
|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|

### 제 16 조 ( 비용 변경 및 절차 )

- 상기 요금 산정의 기본이 되는 시간은 이용자 서비스 계획에 정해진 서비스에 걸리는 표준적인 시간을 기준으로 한다.
-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의 급여의 범위를 넘은 서비스 이용의 요금은 전액이 이용자의 본인 부담이 되기 때문에 미리 상담해야함.

- 서비스 시간 변경은 수급자 및 보호자와 상담 후 동의가 있을 경우 바로 반영 됨.
- 노인장기요양보험 적용의 경우에도, 보험료의 체납 등에 의해, 보험공단이 사업자에게 요양보험 급여를 하지 않는 경우가 있으면, 그 경우 이용자는 1개월에 대해 요금표의 이용요금 전액을 지불을 해야 함.
- 이용료의 지불을 할 경우에 본인부담금에 대한 명세서를 발행함.
- 이용자의 신체적 이유 또는 폭력행위 등의 사정으로 이용자 또는 그 가족 등의 동의를 얻어, 방문 요양원 2명이 방문하는 경우에는 2인분의 요금이 됨.
- 매해 1월 1일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바뀐 수가 변동에 따른 변경 계약서를 제공하고 서명을 받음.
- 직원에게도 매년 수가 변경을 공지(직원 회의 및 게시판을 통해 안내)
- 그 외의 기타비용 : 서비스의 실시에 필요한 주택의 수도, 가스, 전기, 전화 등의 비용은, 이용자의 부담임.

## 제 5 장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

### 제 17 조 ( 서비스 내용 )

#### 1. 서비스 내용

가)방문요양 :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지원, 일상생활지원, 개인 활동, 정서지원, 기능회복훈련, 치매관리지원, 응급서비스 등을 제공한다.

- ① 신체활동지원 : 세면도움, 구강관리, 머리감기기, 몸단장, 옷 갈아입히기, 목욕도움, 식사도움, 체위변경, 이동도움, 신체기능의 유지증진, 화장실 이용하기 등
- ② 일상생활지원 : 취사, 청소 및 주변정돈, 세탁 등
- ③ 정서지원 : 말벗, 격려 및 위로, 생활상담, 의사소통 등
- ④ 기능회복훈련 : 신체기능의 훈련, 기본동작 훈련, 일상생활동작 훈련, 인지 및 정신기능 훈련, 기타 재활치료 등
- ⑤ 치매관리지원 : 행동변화 대처 등
- ⑥ 응급서비스 : 응급상황 대처 등

나) 방문목욕 :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등을 방문하여 차량 및 가정 내에서 목욕서비스를 제공한다.

- 목욕준비, 이동보조, 몸씻기, 머리 말리기, 옷 갈아입히기, 목욕 후 주변

정리 등

- 2인 1조가 되어 각 서비스별로 동시에 진행하여야 함.

## 2. 요양보호사의 업무범위

- 1) 수급자의 가족에 대한 서비스에 대해서 제공할 수 없다.
- 2)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에 대해서 제공할 수 없다.
- 3) 그밖에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에 대해서 제공할 수 없다.

## 3. 비용의 부담

- 1)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은 장기요양급여 수가기준에 준하며,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가 결정,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.
- 2)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초과한 금액에 대하여 수급자가 전액 부담하여야 한다.

### 제 18 조 (서비스 유의사항 및 비용부담)

○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(원)

| 1등급       | 2등급       | 3등급       | 4등급       | 5등급       |
|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|
| 2,306,400 | 2,083,400 | 1,485,700 | 1,370,600 | 1,177,000 |

※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(위원장 : 보건복지부 차관)가 결정,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(매년 보건복지부 고시)에 따름

○ 수급자 자격별 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 비율

| 구 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재가급여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|
| 일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5%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
| 기초수급권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0%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
| 기타 의료수급권자<br>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 (희귀난치성, 만성질환자)         | 본인일부부담금<br>100분의 60<br>감경하는 자 | 6% |
| 저소득층 (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<br>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해당자) | 본인일부부담금<br>100분의 40<br>감경하는 자 | 9% |

### ① 방문요양

(1) 1회 최대 4시간 까지 서비스함. 필요시 하루에 2회 방문까지 서비스 되며,  
이 경우 방문간격은 2시간 이상이어야 함.

(2) 심야(22시~06시) 및 일요일은 수가의 30% 가산, 공휴일(관공서의 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함)의 경우 50% 가산됨.

(3) 수급자와 가족요양보호사의 가족요양일 경우, 1일 60분(최대 월 20일 가능), 공단에서 치매 등 중증대상자로 인정해 주는 경우 1일 90분(최대 31일)가함.